

문서번호	시설안전팀-5976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9.25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건설안전본부장
		09/25
고정일	김태환	김승호
협 조		
감 사		

## 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

2017. 9.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

# 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 보고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11:00~11:30

장 소 : 가락몰 업무동 14층 시설안전팀 회의실

## 참 석 자

-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참석여부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참석
위원	기획팀장	권상구	참석
위원	재무팀장	김진중	참석
위원	농산팀장	강성수	참석
위원	수산팀장	최영규	참석
위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참석

※ 유통물류팀장은 의안 제5호에 대한 소관부서장으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

- 간 사 : 시설안전팀장 김태환

## 소관부서

- 의안 제5호 : 유통물류팀

## 안 건

- 의안 제5호 :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 대아청과(주) 비가림시설  
1동 신축

회의 내용 : 회의록 참조(붙임 #2)

## 심의 결과

- 의안 제5호 : 원안 승인

## □ 승인 조건

### 1. 특기사항

- ㉠ 대아청과(주)는 비가림 시설내 통로 확보를 위해 영업 및 상품 적치선을 준수하며, 적치물 점용에 따른 통로 기능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관리에 책임을 진다.
- ㉡ 비가림 시설내 통로 면적은  $36m \times 7m = 252m^2$  확보 한다.
- ㉢ 대아청과(주)는 통로 확보를 위해 18:00~09:00까지 질서(교통) 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한다.
- ㉣ 비가림 시설은 도매거래 시간외(09:00~17:00) 고객 주차장으로 환원한다.
- ㉤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대아청과(주)'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복구하며, 시설물 및 공작물,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으며, 대체공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 2. 일반적 사항

- ㉠ 본 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비용은 대아청과(주)가 부담한다.
- ㉡ 가설건축물의 승인용도 이외로 사용을 금지하며, 승인조건을 이행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해당 가설 건축물을 대아청과(주) 비용으로 철거한다.
- ㉢ 대아청과(주)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본 시설의 설치, 사용,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설치공사시 통행인의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용 잔재물은 대아청과(주) 책임하에 도매시장 밖으로 반출한다.
- ㉤ 가설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도서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 ㉥ 설치공사 관련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 공사에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 공사 착공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감리계약서
- ㉡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 신고한다.

## □ 행정 사항

1. 가설건축물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확인서 징구(유통물류팀)
2.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팀)
3. 착공계 제출 (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 공사감리계약서
4. 시공관리(시설안전팀)
5. 준공계 제출 (대아청과주) → 시설안전팀)
6.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유통물류팀)

**붙임 :**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부의안 1부. 끝.

# 의 결 서

(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 \_ 의안번호 제5호)

- 의 제 :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 대아청과(주) 비가림시설 1동 신축
- 주 문 :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 대아청과(주) 비가림시설 1동 신축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결정한다.
- 심의결과 : 의안 제5호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 공지내 대아청과(주) 비가림시설 1동 신축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한다.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17년 9월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설건축물심의회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김승호
위 원	기획팀장	권상구	권상구
위 원	재무팀장	김진중	김진중
위 원	농산팀장	강성수	강성수
위 원	수산팀장	최영규	최영규
위 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김인수

# 2017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심의회 회의록

(의안 제5호)

□ 일 시 : 2017. 9. 25. (월) 11:00 ~ 11:30

□ 장 소 : 가락물 업무동 14실 시설안전팀 회의실

□ 참 석 자

○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

구 분	소 속	성 명	참석여부
위원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승호	참석
위 원	기획팀장	권상구	참석
위 원	재무팀장	김진중	참석
위 원	농산팀장	강성수	참석
위 원	수산팀장	최영규	참석
위 원	환경교통팀장	김인수	참석

※ 유통물류팀장은 의안 제5호에 대한 소관부서장으로 심의위원에서 제외함

○ 제안자 및 안건

구분	소관부서	신청자	안건
의안 제5호	유통물류팀	대아청과(주)	관리금융동비거림시설 북측편 대아청과(주) 비거림시설 1동 신축

○ 간 사 : 시설안전팀장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설건축물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 금일 부의안건 제5호는 관리금융동비가림시설 북측편에 대아청과(주) 비가림시설을 1동 신축하는 건으로 소관부서는 유통물류팀입니다. 소관부서장께서는 의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물류팀장 : 박스포장으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제주무 하차경매시 빗물에 의한 제품손상이 있어, 이를 목격한 제주도 출하주 및 제주도 관계기관의 우천시 상품보호와 냉해방지 대책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말 준공예정인 헬리오시티 입주민들의 경매소음 민원이 예상되어 해당 위치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반입농산물 상품보호와 경매소음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비용은 대아청과(주) 부담으로 할 것이며, 준공후 현대화사업 추진시까지 2,3년 정도 사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축예정인 비가림시설 내부에 통로를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께서는 심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팀장 : 비가림시설 신축위치가 주차장 및 통로로 이용되는 공간이어서 교통,주차문제로 반대의견이나, 무 하차경매에 대한 회사 정책상 부득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가림시설 승인시 신청자가 제출한 이행확인서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탐정로 부근 도로를 보면 경매품 및 경매관계자들이 경매장 이용구간을 넘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통물류팀장 : 현재 과거보다 경매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도로점유 시간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나, 도로를 점유하여 경매에 이용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원활한 도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승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시 연장여부에 대해 가설건축물심의회에서 심의후 연장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팀장 : 가설건축물 신축 승인시 신청자가 승인 사용하고 있는 기존 가설건축물에 대한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승인 요건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 금회 심의건은 무배추 하차경매와 관련된 공사의 도매시장 운영정책상 부득이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산팀장 : 금회 심의건이 승인되면 월동무 컨테이너 반입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통물류팀장 : 금회 심의건과 별개로 월동무 컨테이너 반입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나, 추진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음 저감 및 바람에 의한 상품 동해방지를 위해 금회 신축 예정인 비가림시설에 북측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관 : 소음 저감 및 동해방지를 위해 북측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 이상으로 금회 심의안건에 승인토록하고 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